

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안내문



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합니다.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 하셔야 하며,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

※ 부적격자는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신체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기준 (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)

공급유형		구분	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	
	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	
소득 기준 구분	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~6,208,934원	~7,200,809원	~7,326,072원	~7,779,825원	~8,233,578원	~8,687,331원	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초과~120% 이하	6,208,935원~7,450,721원	7,200,810원~8,640,971원	7,326,073원~8,791,286원	7,779,826원~9,335,790원	8,233,579원~9,880,294원	8,687,332원~10,424,797원	
	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초과~140%이하	6,208,935원~8,692,508원	7,200,810원~10,081,133원	7,326,073원~10,256,501원	7,779,826원~10,891,755원	8,233,579원~11,527,009원	8,687,332원~12,162,263원	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초과~160%이하	7,450,722원~9,934,294원	8,640,972원~11,521,294원	8,791,287원~11,721,715원	9,335,791원~12,447,720원	9,880,295원~13,173,725원	10,424,798원~13,899,730원	
소득 기준 초과 / 자산 기준 충족 (추첨제, 30%)	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40%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8,692,509원~	10,081,134원~	10,256,502원~	10,891,756원~	11,527,010원~	12,162,264원~	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60%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9,934,295원~	11,521,295원~	11,721,716원~	12,447,721원~	13,173,726원~	13,899,731원~	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 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20%(상위소득)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 기준 120%초과~160%이하))을 선택하셔야 합니다.
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
- 추첨제 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(3.31억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453/753) * (N-8), 100% 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
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.

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: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
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)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자 추가서류 (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)

구분	서류유형		발급 기준	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					
	필수	추가(해당자)		해당서류					
추첨제 신청자		O	본인 및 세대원	부동산소유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동산소유현황[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] 				
		O		등기사항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(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) 				
		O		재산세 납부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동산 소유자(인터넷등기소) 				
		O		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동산 소유자(위택스) 				
		O		토지 표준지 또는 개별 공시지가 조회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 소유자(위택스) 				
		O	해당자	농지원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 소유자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, 정부24) 				
		O		축산업 허가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농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(행정복지센터) 				
		O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초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업」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, 축산 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(지자체 축산과) 				
		O		종종재산목록 또는 규약 또는 총회결의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부상 도로, 구역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(토지이음) 				
		O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종종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			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3.31)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
※ 주민등록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훈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어도록 "전체포함" 및 "상세"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당한 당첨자(적격여부)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첨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.

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안내문



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합니다.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 하셔야 하며,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

※ 부적격자는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신체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③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	① 해당직장 ② ③ 세무서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 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허분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	①, 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	①, 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① 재직증명서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	①, ② 해당직장
자영 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, 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 ②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제출	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※ 표준(기준)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[국민연금 미가입자]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※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	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① 세무서 ②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	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	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(직인날인) ② 위 내용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(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	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
무직자	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건본주택 비자) ② 전년도 1월 1일부터 모집공고 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 확인각서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) 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※ 소득이 없는 경우 : 소득사실증명서(신고소득사실 없음)	① 건본주택 비자 ② 세무서

※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바랍니다.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3.31)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
※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어도록 "전체포함" 및 "상세"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당한 당첨자(적격여부)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첨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.